

<전 매체> 2022년 6월 13일(월) 08: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문의 :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이장훈 과장(044-204-7850), 송제훈 서기관(7329),
김태우 사무관(7856), 이경규 사무관(782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 대상으로 7월 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접수
 - 공동대표 사업체(5.8만개), 사회적기업(0.2만개)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
 -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매출감소가 사전에 확인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6월 13일 시작되는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②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본인명의 휴대 전화(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전화 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을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타 안내사항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6월 12일까지 총 337만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개사의 91%)에게 약 20조 5천억원을 지급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제훈 서기관(☎ 044-204-7329), 김태우 사무관(☎ 044-204-7856), 이경규 사무관(☎ 044-204-7829)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